실무체험학기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학칙 제5조제4항에 의한 실무체험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탄력적 인 학기 운영을 통해 단기간에 이론과 실무를 집중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기운영) ① 실무체험학기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정규학기 중 별도 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체험학기는 이론과 실습 또는 실습과 이론을 연속적으로 수강하는 순차적 형태로 운영한다.
- 제3조(과목편성및운영) ① 실무체험학기의 과목 편성 및 운영은 인재개발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② 과목 편성은 실무세미나(3학점), 실무체험실습(3학점)의 2과목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추가 편성 및 개설함 수 있다.
- ③ 실무세미나 과목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하며, 실무체험실습 과목은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되 단기인턴십 과정과 별도로 운영한다.
- ④ 실무체험학기 참여자는 실무세미나 과목과 실무체험실습 과목을 모두 수강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및수강학점) ① 실무체험학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방학 전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실무체험학기의 수강 학점은 개설 과목에 따라 6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대상자선발) ① 실무체험학기의 참여 대상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하며, 직전학기까지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한다. 단, 평점 평균이 없는 당해연도 편입생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한다.
- ② 실무체험학기 참여자는 당해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 ③ 실무체험학기 참여 대상자는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과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분야와 실습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발한다.

제6조(등록금) ① 실무체험학기의 등록금은 학점 단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 학기 시작 전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등록금은 소정의 등록기간에 2과목 이상 수강에 대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기 참여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

취소신청서 제출일	환불금액
학기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없음(수강취소 불가)

제7조(지도 및 성적평가) ① 실무세미나 과목은 산업체 및 취업지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체험실습 과목의 지도교수는 전공지도교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무체험학기 개설 과목의 성적 평가 대상은 총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며, 성적 평가는 학기 종료 후 Pass 또는 Non pass로 부여한다.

제8조(강사료) 실무체험학기 실무세미나 과목의 강사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한다. 제9조(성적표기) 성적표상에 '실무체험학기'로 구분하고, 이수 과목명을 표기한다.

- 제10조(중도포기) ① 실무체험학기 참여자는 실무세미나 과목과 실무체험실습 과목에 모두 참여하여야 학기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장 승인을 통하여 중도 포기를 허가한다.
- ② 중도 포기는 학기 시작 전 소정의 기간에 신청받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시작 이후 중도 포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강 과목을 즉시 취소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한다. 다만, 실무체험실습 과목 참여업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기 이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환불한다.
- 제11조(학점인정) ① 실무체험학기로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전공 학점(복수전공 포함)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인턴십(IPP인턴과정 포함)으로 취득한 전공 학점과 실무체험학기의 실무체험실습 과목으로 취득한 전공 학점의 합산이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할시에는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 인 학과는 18학점까지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학기 구성이 실무체험실습 과목을 이수 후 실무세미나 과목으로 진행될 경우에 실무체험실습 과목 종료 이후의 중도 포기는 단기인턴십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12조(이수제한) ① 인턴십(IPP인턴과정 포함)으로 취득한 학점과 실무체험학기의 실무체험실습 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의 합산은 최대 23학점까지 가능하며, 최대 이수 횟수는 인턴십(IPP인턴과정 포함)을 포함하여 최대 3회까지 허용한다.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인 학과는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36학점까지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실무체험학기의 참여는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 제13조(학적사항) 실무체합학기 참여자는 학기 중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다.
- 제14조(준용) 실무체험학기의 실무체험실습 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턴십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20학년도 실무체험학기 등록금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과목별 등록금을 납부하며, 중도포기에 따른 화불 또한 과목별 수업일수를 적용하여 화불한다.